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2008. 5. 29.



법 무 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008. 5. 29.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이하 '특별사면' 등이라 함) 대상자 심사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음

< 아 래 >

1. 일 시 : 2008. 5. 29(목) 10:30~11:30

2. 장 소 : 법무부장관 회의실

3. 참 석 자 : 위 원 장 김 경 한

위 원 문 성 우

위 원 차 동 민

위 원 박 기 준

위 원 이 인 규

위 원 권 영 건

위 원 곽 배 희

위 원 오 영 근

4. 배 석 자 : 간 사 신 유 철

서 기 송 경 호

5. 심사대상

○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 등 상신의 적정성 여부 심사를 요청한 163명

6. 심사내용

- 법무부장관 김경한 : 17대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인도주의적 배려에 따라 수형중이거나 형집행정지 중인 고령자 및 1급 장애인, 형집행정지중인 중증 환자, 수형중인 임산부, 유아 대동자 및 부부수형자, 노역수형자에 대한 사면을 준비함. 오늘 일정상 법무부차관으로 하여금 위원장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법무부차관 문성우 : 법무부장관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간사인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은 안전과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람
-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신유철 : 70세 이상 고령자, 1급 신체 장애인, 중증환자, 임산부·유아대동 부녀자·부부 수형자, 노역 수형자에 대한 순서로 심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음
- 법무부차관 문성우 : 먼저,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음. 간사는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면 상신 기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신유철 : 70세 이상인 수형자 중 집행을 2/3이상인 자 27명과 70세 이상 형집행정지자로서 집행을 1/2이상인 자 1명 등 28명을 형집행 면제하고, 70세 이상인 수형자 중 집행을 1/2이상 2/3미만인 자 24명을 1/2 감형하고자 함
- 법무부차관 문성우 :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법무부차관 문성우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1급 신체장애자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음. 간사는 사면 상신 기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신유철 : 1급 신체장애 수형자 중 집행을 2/3이상인 자 8명과 1급 신체장애 형집행정지자로서 집행을 1/2이상인 자 3명 등 총 11명을 형집행면제하고, 1급 신체장애 수형자 중 집행을 1/2이상 2/3미만인 자 3명을 1/2감형하고자 함
- 법무부차관 문성우 :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곽배희 위원** : 감형 대상자 중에 성폭력사범이 있는 것으로 보임. 1급 신체장애자라고 하더라도 성폭력사범에 대하여 감형의 은전을 부여하는 건 부적절함
-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신유철** : 카메라로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는 등 죄질 불량하나, 강간, 강제추행까지 이르지 않은 점과 1급 신체장애 수형자로서 집행을 1/2이상 2/3미만인 점을 감안, 특별감형 대상자로 분류한 것임
- **법무부차관 문성우** : 곽배희 위원님의 지적을 감안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인규** : 잔형집행면제 대상자 중 잔형기가 1일인 경우가 있는데 사면의 실익이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무부차관 문성우** : 지적대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법무부차관 문성우**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중증환자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음. 간사는 사면 상신 기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신유철** : 형집행정지자 중 형집행정지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한 자 5명과 형집행정지자 중 집행을 2/3이상인 자 11명 등 16명을 형집행면제하고, 형집행정지자 중 집행을 1/2이상 2/3미만인 중증환자 5명을 1/2감형하고자 함
- **법무부차관 문성우** :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법무부차관 문성우**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임신부, 유아대동 부녀자 및 부부수형자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음. 간사는 사면 상신 기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신유철** : 임신부인 부녀자 수형자 중 집행을 1/2이상인 자 1명, 유아대동자인 부녀자 수형자 중 집행을 1/2이상인 자 3명, 부부 수형자 모두 집행을 1/2이상인 자 중 집행율이 보다 높은 자 5명 등 9명을 형집행면제하고자 함
- **법무부차관 문성우** :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법무부차관 문성우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노역수형자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음. 간사는 사면 상신 기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신유철 : 벌금 100만원 이하로 선고된 노역 수형자 중 집행을 1/2이상인 자 67명을 형집행면제하고자 함
- 법무부차관 문성우 :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법무부차관 문성우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각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감형 상신의 적정성 여부를 의결에 부치도록 하겠음.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 대상자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시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의결에 부치고, 나머지 대상자에 대하여는 적정 의결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음
- 광배희 위원 :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성폭력사범의 경우에는 1급 신체장애자라고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사면 상신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무부차관 문성우 : 광배희 위원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대상자 업〇〇에 대하여 의결에 부치겠음
- 광배희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 전원 : 광배희 위원의 의견에 동의함
- 법무부차관 문성우 : 사면 상신대상자 업〇〇은 부적정 의결되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인규 : 잔형기가 1일 남아 있는 1급 신체장애자 수형자도 사면의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사면 상신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법무부차관 문성우 :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대상자 최〇〇에 대하여 의결에 부치겠음
- 이인규 위원을 제외한 의원들 전원 : 이인규 위원의 의견에 동의함
- 법무부차관 문성우 : 사면 상신대상자 최〇〇는 부적정 의결되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법무부차관 문성우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 등 상신의 적정성 여부 심사를 요청한 163명 중 161명에 대하여 적정의결, 나머지 2명에 대하여 부적정 의결되었음. 끝으로 사면법 제10조의2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상신이 적정하다고 심사한 사안의 심의서와 회의록은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달리 의결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한 간사의 설명과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음
-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신유철 : 이번 사면 상신 적정 대상자 161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주요 대상자가 없는 점을 감안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 차원에서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하고자 함
- 법무부차관 문성우 : 위원님들께서는 간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사면 상신 적정 대상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공개범위와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차관 문성우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사면상신 적정 대상자 161명에 대하여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하도록 하겠음

7. 심사결과

- 별지 1목록 기재와 같이 총 161명에 대한 특별사면 등 상신이 적정하다고 의결
- 별지 2목록 기재와 같이 2명에 대한 특별사면 등 상신이 부적정하다고 의결

8. 본 회의는 2008. 5. 29. 10:30에 시작하여 11:30에 종료하다. 끝.

2008년 5월 29일

위원장	법무부장관	김경한	
간사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신유철	